

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방안: 법과 제도 중심

이 호 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협약제도
2. 제주사회의 주요 갈등요소
3. 사회통합방안과 사회적 대화: 법과 제도
4. 사회적 대화체제의 의의
5. 결론

1.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협약제도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 특별법은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관광, 청정 1차 사업, 교육, 의료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200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1개의 광역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2007년 11월 21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

- 사회협약위원회의 근거규정과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관련 조례(제정 2007. 11. 21 조례 제299호)에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특징적인 점은 위원회의 구성인데, 사회협약위원회는 30명 이내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학계·언론계·법조계·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관련 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조례 제2조: 구성)하여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지역의 갈등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중재 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상설)사무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시작,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제5조)하고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닌 사안별로 구성되는 ‘의제별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고(제7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7조 ②항),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8조)을 두고 있음.

- **조례의 개정과 의의** : 2012년 6월 11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토론회 개최 등’(제8조의2)조항이 신설되었음. 즉,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 할 수 있으며,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고 하여 ‘갈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활동을 강화’ 토록 하고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의 갈등 사전예방기능 강화**: 갈등해소와 사회갈등 예방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의 다각화방안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영향 분석제 시행,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활동을 확대하고, ① 현안해결 토론회 개최 등 지역별 갈등 예방활동과 사회적 합의형성 도민토론회 개최, ② 사회갈등 및 도민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갈등사례별 처리 매뉴얼 개발, ④ 도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공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⑤ 지역의 주요 갈등 및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⑥ 갈등해소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 내부 공론 확대, ⑦ 문제원인에 대한 인식의 강화 등 갈등해소 처리방안에 대한 내부검토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음.

2. 제주사회의 주요 갈등 현안과제 및 사회협약위원회 과제

- 제주사회에는 2012년 현재 사회협약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중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 과 ‘제주항 탐동항만시설조성’ 관련 사항이 ‘주요 갈등 현안과제’ 라 할 수 있음.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조사(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 및 2011 도정정책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2010. 10)에 따르면 기타, 제주지역 주요 현안과제와 관련 주민인식정도는 ① 신공항건설(찬성우세), ② 영리병원 도입(내국인병원으로 확대)(신중론우세), ③ 관광 전용카지노 설치(찬성우세), ④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찬성우세), ⑤ 육상풍력발전단지 확대(찬성우세), ⑥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찬성우세), ⑦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찬성우세), ⑧ 쇼핑아울렛 설치(찬성다소우세), ⑨ 기타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아울러,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역점과제와 정책방향으로 ① 새로운 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 ② 지역산업의 육성 및 발전, ③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예산 확충, ④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지원 전문인력 양성, ⑤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강화, ⑥ 구인과 구직간의 불일치 해소, ⑦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확충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의 주요 과제영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복지수준 향상’ 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다음이 거론되고 있음. ①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③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④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⑥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동시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주력하여야 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로는 ① 주민참여 기회확대, ② 경제적 격차 해소, ③ 교육격차 해소, ④ 의료격차 해소, ⑤ 문화격차 해소, ⑥ 구도심권 활성화, ⑦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⑧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있음.
-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로 거듭나기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 로 ①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준수, ② 기업 및 투자유치의 확대, ③ 수출확대, ④ 공무원의 역량강화, ⑤ 행정과 의회의 협력, ⑥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확

대, ⑦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⑧ 도민의 선진 의식, ⑨ 미래성장산업 육성, ⑩ 규제완화, ⑪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등이 과제임.

3. 사회통합방안과 사회적 대화: 법과 제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5기를 맞아 현재 ① 재정위기 극복(16.0%), ② 일자리 창출(15.8%), ③ 사회통합(11.4%), ④ 관광객 유치(10.5%), ⑤ 미래비전 제시(8.4%), ⑥ 신성장산업육성(6.8%), ⑦ 수출정책(6.5%), ⑧ 기업 및 투자유치(5.8%), ⑨ 특별자치제도 개선(5.5%), ⑩ 1차 산업육성(5.3%), ⑪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영어교육도시 등)(4.3%), ⑫ 대규모 국책사업유치(3.8%) 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회통합’**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제주지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은 ①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따른 갈등(37.3%), ②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24.7%), ③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16.0%), ④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11.9%), ⑤ 공공정책적 갈등(현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10.0%)순으로 사회적 갈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이러한 **‘제주지역의 사회통합저해 요인에 대응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로는 ① 도지사의 사회통합 리더십 발휘(25.1%), ② 갈등 조정 및 중재기능 강화(19.1%), ③ 시민의식의 함양(17.1%), ④ 새로운 법·제도 강화(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등)(17.0%), ⑤ 도의회 역할 강화(7.4%), ⑥ 시민사회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7.2%), ⑦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7.0)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지사의 사회통합리더십’** 외에 시민의식과 함께, 갈등조정·중재 및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제주지역 주요 갈등 현안과 사회통합의 과제에서 나타나듯이 시민의식의 지속적 함양을 전제로 결국 사회통합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 와 관련 **‘제도적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 이 높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함

3.1. 사회적 대화체제의 필요성과 현황

□ 문제제기

- 최근 우리사회의 많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는 공공정책 추진에 사회경제 주체들간 이해와 관점의 차이로 인한 긴장, 갈등과 분열이 분출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GDP의 27%(연간 300조)에 이르고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에 이름(선학태, 2011, p. 64).
 -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정책협의체가 갈등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갈등과 분쟁해결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제 제도화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중심의 낮은 보수중도의 독과점적 정당체제 하에서 정당-이익·시민단체 간에 ‘후원자-고객’ 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음.
 - 둘째, 정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보다는 권력·관료·전문가 등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에 습관적으로 익숙함. 정책결정회로는 성장·구조조정·시장개방라는 정책 어젠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기술관료·전문가 등에 의해 주도된 폐쇄적 방식이었음.
 - 셋째, 자발적 참여가 없는 명망가 중심의 ‘시민없는 시민운동’, 낮은 조직률 등 대표성과 자주성 및 민주성이 결여된 분열적 노동운동의 한계, 사회적 이해와 사회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정치의 미성숙 등이 높은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정치의 발전을 억지함.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세계화 및 개방화로 인한 정책 결정의 대외의존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근원적 사회경제적 도전, 고용없는 성장추세로 인한 성장-고용-복지체제 재조정 필요).

- 한편, 국가의 대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전에 따른 정부 국정수행의 과부하 심화와 이에 반비례 하는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와 함께 새로운 공적 문제 해결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
- 종래 국가 우위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와 시장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지 않고는 국정 수행과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되었음.
- 민주화 이후 한국에는 관료사회의 국가주의적 성향, 기업사회의 시장만능주의적 경향, 시민단체의 저항주의적 태도, 이익단체의 전투주의적 경향이 상존함.
- 반면, 정책협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비하여 정부의 일방적 통치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사회적 합의제는 아직 사회경제 운용·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결과 사회경제적 이슈를 둘러싸고 사회집단 및 세력간에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되고 시장조정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운용·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은 현재 후기민주화 과정에서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다원화의 길을 걸으며 특수집단 간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의 분출현상을 보이고 있음.
- 시장경제, 글로벌 시장화의 진행에 따른 노사정관계를 비롯한 새로운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 소득격차, 지역불균형, FTA(자유무역협정), 공교육, 공공의료, 복지, 저출산·고령화, 문화적 소외, 환경 등.

□ 사회적 대화체제의 조건

- 사회적 대화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한국사회에서 사회협약의 필요성, 가능성, 문제점, 그리고 대안 제시는 무엇인가? 핵심적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 하겠음.

○ 핵심 문제제기 사항

- 사회협약모델 등장이나 오늘날 이것이 강조되는 배경은?
- 사회협약모델은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운동이나 사민주의적 정당체제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이나 북유럽국가의 전유물? - 영미권이나 일본 기타 중진국, 체제전용 국가, 그리고 개도국에서의 사회협약체결시도는 어떠한가?
- 오늘날 사회협약 성격이나 내용은 전통적 사회협약의 내용이나 형태와 동일한가?
- 사회협약의 전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협약체제는 갈등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사회협약체제발전 모델의 정착은 가능한가?

○ 세계화와 변화하는 노동과 자본, 국가의 관계

- 오늘날, 세계화, 민주화, 탈산업서비스 및 정보사회화, 분권화는 글로벌 추세임. 이러한 추세 속에 노동과 자본, 정부의 관계 역시 대립적 관계를 넘어서는 협조와 견제의 복합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
- 무엇보다, 21세기적 사회의 특성은 점증하는 문제해결의 복잡성에 있음. 즉, 사회적 양극화극복, 고용의 위기와 경쟁력확보, 성장과 분배의 균형확보, 저출산고령화추세에 대응 기능하는 사회적 안전망확보 등 노동과 시장, 복지국가의 미래와 관련 사회적 선택은 ① 시장중심적 세계화나 혹은 ② 사회통합적 사회협약체제 발전이냐가 주요한 논점이 되고 있음.

○ 변화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간의 관계

- 70년대 이래 선진복지국가에서 ‘통치의 위기’ (The Crisis of Governability)와 함께 ①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② 80년대 이래 후발개도국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의 변화, ③ 90년대 체제전환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④ 2000년대 중국의 부상 등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부상 세계시장경제에의 파급효과, ⑤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 등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심화

로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새로운 관계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K.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 변화하는 개방화와 세계화 추세에 심화 속에 공통적인 과제로 고용의 위기,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개발과 환경의 갈등 등 우리나라는 후기민주화 단계에 선진국의 문턱에서 사회통합의 과제와 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글로벌 시장화 vs. 글로벌 정치사회의 파편화(fragmentation)

- 80년대 이래 시장은 글로벌화 또는 지역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정치는 국가간 상이한 역사와 제도, 전통과 문화에 기반 획일적인 체제로 수렴하지도 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만도 않은 상황에서 시장통합의 압력과 파편화 된 정치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시장통합의 추세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의 과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 발전은 그 유효성과 실효성과 함께 오늘날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음.

○ 세계화 추세 속에 사회적 대화 부활의 역설

- 사회협약체제는 전후 복지국가 발전과 함께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회통합 모델. 선진 복지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전통적’ 사회협약체제는 위기와 침체에 빠졌음.
- 반면에,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성장, 고용, 분배, 그리고 제반 사회통합적 과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문제의 수준이 더욱 세계화하는 추세가 가속화 됨.
- 포스트복지국가(post-welfare-state), 포스트권위주의국가(post-authoritarian-state), 포스트사회주의국가(post-socialist-state), 신흥산업화국가(new-developmental-state)에서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국가’의 성장, 고용, 복지 문제해결 ‘능력과 권한’이 축소된 반면, 사회통합 과제는 점증하는 추세임.

- 한편에서, 이러한 정부의 능력과 권한의 축소와 다른 한편에서, 민주화의 글로벌한 보편적 흐름, 참여민주주의 강화 속에 정부의 정책적 독점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체제와 사회적 대화'가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와 사회협약 필요성의 증가

-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국가의 기능'이 변모하고 있음. 즉,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나, 그 기능은 '경쟁력'을 우선시(competitive corporatism)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의 복잡성 증가(고용, 성장, 경쟁력, 사회적 안전망 구축) 경향 속에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며,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축소되고 이를 시장의 확대와 시장의 힘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심화됨
- 그럼에도, 시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분배와 사회적 자원 배분의 양극화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경향 등에 대한 대안이 부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러한 정부와 시장의 실패는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효율성' (democracy and efficiency)과 '시장의 조정' (Cordinated Market Economy, CME) 등이 강조되며 사회협약체제의 발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

○ 노동의 실패: 노동 운동의 위기와 정치적 개입의 다원화

- ①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② 실존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정파주의적 노동운동의 쇠퇴, ③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확산, ④ 진보정당의 의회진출, ⑤ 노동운동의 'positive power'로서 사회적 이슈의 선도적 제기와 적극적 전략을 통한 사회적 지지 확보실패, ⑥ 서구형 포스트물질사회(post-material-society)로의 점진적

이행, ⑦ 개인주의화 경향의 대두와 함께 ‘동원’ (mobilization)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한계와 위기가 심화 됨. 반면, 개방화, 민주화로 정치적 개입의 수준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체제를 통한 정책 참여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개방화시대 후기민주주의의 공고화지연

- 우리 사회는 87년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화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달성과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산업화이후 선진복지국가의 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됨.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이 지속되는 한편,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내연화됨.
- 즉,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관계는 외환위기이후 새로운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형 사회협약체제의 발전은 이러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 사회적 대화는 선택인가 필수적 사항인가?

- 오늘날 사회적 대화는 글로벌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으로 꾸준히 강조되는 경향. 이러한 경향 속에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체제의 발전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필수적 사항이 되고 있음.

3.2. 사회적 대화의 틀: 협의 vs. 합의

□ 사회협약 구성요건으로서 사회적 합의의 정의

○ 전략적 선택론과 사회적 대화

- L. Baccaro는 전통적 사회협약체제와 달리 90년대 이래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 이탈리아, 한국의 사회협약과 사회코포라티즘의 출현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코포라티즘의 구조와 체계를 갖고 있지 않거나 미비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협약을 도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코포라티즘의 제도와 조직적 전제조건 없이 '민주화 과정'(democracy)과 '내부토론'(discussion)과정을 통해 그런 협약체제가 기능할 수 있다고 봄.
- 특히, 그러한 대안적 시스템이 아일랜드나 이탈리아의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한국 등의 경우처럼 '분권화 된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작동된 경우로 제시되고 있음.

○ 사회적 합의의 개념정의

- 사회적 합의의 개념정의는 첫 번째, 사회적 합의를 사회적합의주의, 즉, 사회적 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으로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단지, 경제사회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관해 관련 당사자들의 절차적인 자문과 합의로 간주하는 것. 이때의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자문(social consultation)이며, 이해대변구조로서의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전제하지 않는 소극적 규정임. 세 번째는 양자의 중간수준으로서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연계되지만 그 하위형태간의 상대적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 즉, 이해대변 구조와 정책결정체계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이 경우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와 동의어로 간주.

○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와 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노사의 참여 (정부의 Initiative, 정책의 입안, 결정과정에서 노사와 협의): 정책결정
-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는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교환체제임 (노사정의 공동 Initiative - Corporatist 정책연대를 위한 역사적(historical), 정치적(political), 제도적(institutional) 인프라가 필요).

그 교환의 결과로서의 사회협약의 체결: 이해대변

- 사회적 협약은 임금, 고용, 사회복지를 둘러싼 노사정간 정치적 교환의 결과 형성된 국가수준의 합의(입법, 행정 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전제로 하며 그러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한국은 '신조합주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체계나 분쟁조정과 같은 전통적 노사관계 제도에 더하여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Concertation)가 중요 제도로 모색되어 왔음.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함께 사회협약이 1980년대 중반이후 새롭게 등장함. 다시 등장한 사회협약은 국가, 시기,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음.
- 현재는 공공재정, 임금, 노동시장, 사회복지 정책 등에 대해 노사정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시적 정책조정'을 뜻하게 됨.

3.3. 새로운 사회협약/협회의 등장

○ 1980년대 중반이후 사회협약의 실패 이유

- 신조합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음.
- 새로운 사회협약/협회의 등장. 그 배경은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음. 즉 대내외적인 압력과 정치적, 경제적 위기(재정적자, 경기침체, 고실업, 비정규직 증가 등)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주의나 혹은 시장주의 대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협약주의를 전략적으로 채택. 노, 사, 정 모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필요에 따라(서로 다른 이유에서) 사회적 협의주의가 재등장.
- 브라질에서 국가의 경제체제개혁을 위해 정부의 주도로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경제사회개발위원회' (CDES) 구성됨.

- 스페인은 높은 실업률(22%), 비정규직 증가문제에 직면하여 “고용안정, 단체교섭의 촉진 등에 관한 사회협약” 체결함. 1997년 4월의 사회협약은 비정규노동의 정규노동으로 유도를 위한 부당해고시 보상과 비용분담 문제를 다룬 역사적인 사회협약으로 평가됨.
- 아일랜드는 최근 다시 유럽자본의 재배치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1980-1990년대 사회협약의 체결로 국가적 위기를 성장과 번영으로 전환시킴.
- 결국, 글로벌한 차원에서 여전히 신조합주의적 조건들이 미흡하였지만,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참여요구강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방식의 민주화(조합원투표 등) 등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한데 힘입어 사회협약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옴.

3.4. 사회협약의 의제와 제도화

○ 의제

- 포괄적인 경제사회발전의제에서 지역 및 업종 맞춤형 의제로 진화(브라질과 이탈리아)함.
- 제한된 영역(예 임금이나 고용)에서 연관영역(사회보장개혁)으로 확대되기도 함(스페인, 네덜란드).
- 성장중심에서 분배와 사회적 배제 극복으로 성숙되어 감(아일랜드)

○ 제도화

- 사회적 대화과정의 제도화는 사회적 추체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교섭체제의 구축 및 협약체결 후 이행점검 체제의 구축이 필요.
- 브라질은 CDES(경제사회발전위원회)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여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새로운 사회계약’ 도출을 위한 기능을 부

여하고 있음.

- 스페인은 CED(경제사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체결을 모색해오고 있음.
- 이탈리아는 CNEL(국가경제노동위원회)가 헌법에 의한 자문기구로 이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차원에서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분권화된 사회적 협의제도의 발전을 독려해오고 있음.
- 네덜란드는 SER(사회경제협의회)가 법적 기구(정부와 의회 상대 경제사회정책건의의로), 그리고 노동재단(임금 및 단체교섭 등 직접적 노사관계 이슈)이 민간기구로 사회적 대화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음.
- 아일랜드는 NESC(국가 경제사회협의회)에서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노사정의 '공동분석'을 담고있는 전략보고서(매 3년)를 발간하며 사회적 대화 파트너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중앙차원 정책협의의 기초로 하고 있음.

○ 조직

- 대부분의 나라에서 본회의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는 대부분 고정 멤버로 임명직이며 상설적 기구로 운영
- 각 분과(특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3.5. 시사점

□ 사회협약과 사회적 협의는 이제 선진국의 일반화된 제도임

- 대부분의 경우, Social Corporatism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Social Concertation에 기반한 사회적 협의의 형태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이 가운데 전후 확립된 가장 엄밀한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의제주도 (위원회에서 의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예외적)를 주도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협약 체결함.
 - 선진국 가운데 노사 및 시민사회 대표가 국가수준에서 경제사회정책과 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들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오히려 드문 실정이며(미국, 영국 등), 그 외에도 사회협약과 협의회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음.
 - 사회협약과 사회적 협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입법과 행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노사자체의 제도적 노력이 필수임.
-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고용-소득-지출 '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약화됨
-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선진국 길문턱한계 (잠재성장률(KDI) : '80년대 8.6%, '90년대 6.3%, 2000년대 4%대이며, 고용률은 63.8%로 OECD평균(66.1%)보다 낮음
- 사회적 대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시장효율을 담보하고 노사정의 역량결집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체제와 고용기반을 유지하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국가발전전략임.
- 현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확실히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그 전략적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국은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90년대 초 이래 노·경총 임금가이드라인(92/93) 이후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체제로서 노개위(96/98)를 거쳐 외환위기시에 노사정위가 발족되어 현재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역사가 10여년에 이르고 있음
- 특히,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이면서도 아직 「불안정한 사회협약」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

(Baccaro, 2006)되고 있음.

- 「불안정한 사회협약」에서 「안정적인 사회협약」으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체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 왔음.
- 특히, 지역·업종단위 노사정대화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별 지역·업종간의 협의 기반 조성, 지역별 노사협력·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연계하고 노사관계의 중심축을 중장기적인 일자리창출과 교육훈련체제의 육성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여 옴
- 그간의 사회적 대화는 나름의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과 지적이 지속되어 옴.
- ① 대립과 불신의 비타협적 노사관계 등 문화적 문제, ②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 의식의 미성숙, ③ 대화체제 운영경험의 미비와 효율성 등 제도적 문제, ④ 노사단체 등 참여주체의 대표성 문제, ⑤ 사회적 대화 체제 발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된 의지와 노력 및 지원의 부재와 전문성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민주노총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 체제에 불참하고 있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 실정임.
- 그러나,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우리가 맞고 있는 21세기적의 대내외적 도전(고용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인적자원 수급과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발전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권한은 제약되는 반면, 사회적 주체들간 협력 및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임. 또한, 지식기반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주체들간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됨.

○ 사회적 대화 및 사회통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만, 구조적, 제

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

-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이들의 조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노사단체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중층적 교섭 구조 구축과 활성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정규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와 중소기업 노사단체 육성과 이들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한편, 노사자치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필요함. 정부는 노사간 파트너십 사업(노사발전재단 등)을 지원 노사자치주의와 함께 노사단체 조직력과 대표성제고 노력을 촉진하여야 함.
-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대화가 다양한 정책 영역과 수준(중앙/산업/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제 발전되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지역, 업종 수준의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기업/작업장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상시적 사회적 대화체제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대립구조를 극복하고 정부와 지자체일방이 아닌 사회적 대화주체간 파트너십 형성과 신뢰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대화체제가 문화로 형성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 즉, 장기적으로 협의와 동반자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밝히고 문화 형성 과정을 함께 기획-이행-평가하여야 할 것임. 노사 공동연구작업 확대, 사회적 대화의 일상화 등이 수반됨.(네덜란드의 노사정 합의 문화는 짧아도 2차 대전 이후 60년에 걸쳐 형성되었고 일본의 노사동반자 문화 역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노사민정 협의나 노사동반자 관계의 역사는 이제 10여년에 불과함)

3.6.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제

- 대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촉진과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의 안정이 선결요건임.
 -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증가를 위해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사회보장의 선진화가 필수적 선결요건임.
 - 아울러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계비안정과 삶의 질 제고가 동반되어야 할 필수 사항으로 주거비용과 교육비용의 안정과 사회적 분담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조건임.
 -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사와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여야 함

-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위기의 해소
 -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고용기회, 소득수준,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직업훈련, 휴가 등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정규-비정규 또는 직접고용-간접고용-특수고용으로 근로조건이 양극화됨.
 - 고용의 양적·질적 위기가 심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을 통한 상시적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가 무엇보다 절실함.
 - 고용의 양적 위기에 대하여 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 일자리나누기 (job-sharing)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고용의 질적 위기는 인적자원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생산성제고와 소득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고임금-고급노동의 high-road 전략을 추구하여 고임금-저임금군으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장시간노동의 low-road 체제를 극복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업종별 대화나 교섭체제를 구축 기업별 노조주의나 기업별 근로조건 양극화를 초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하여야 함.
- 특히, 대기업-중소기업-하청기업으로 인건비와 생산비용이 구조적으로 전가되는 부정적인 쇄사슬 구조를 차단하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제도화 하여야 함.
- 산업정책적으로 업종과 지역적 차원에서 산업육성-고용구조-직업훈련체계 등 인력공급체계 등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임. 특히, 최근의 조선 산업과 향후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 등 대규모 국가 기간 산업에서 이러한 대응능력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요구되고 있음.

○ 국민생활 기초보장강화를 통한 양극화해소

-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적용확대 노력함.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선, 기초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리 지원하는 방식을 법제도 개선이 필요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실질 적용확대와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로유인세제(EITC)제도와 연계하여 복지의존도의 증가와 노동력의 비활성화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함.
- 저소득계층이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갇히지 않고 빠른 기간 안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회보장의 기능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안정성 제고

-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의 강화와 고용보험제도 운영합리화
-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자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고용보험제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확대를 통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을 합리화하여야 함.

○ 국민연금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강화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혁함과 동시에 현 세대 중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특별히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면제, 육아출산근복무 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기여인정(credit)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함.

○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의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하고, 중대 상병의 환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특별히 질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예방적 진단 및 치료조치들을 강화하고 약제비의 본인부담제를 개선하여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선진화

-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선진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노력과 동시에 산재보상보험의 급여체계를 합리화하고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야 함.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강화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기초소득보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수준을 선진화하고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취업기회의 확충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여야 함.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확대

- 주택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용의 최소화에 두고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를 다변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기금에 의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야 함.

○ 평등한 교육 ‘기회’ 의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서비스의 다양화

- 평등한 교육 ‘기회’ 의 확대를 위해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와 정책적 노력을 최대화하고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함.
-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 학자금 대부 및 지원프로그램을 중앙-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소득격차에 의한 교육기회 양극화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외국의 사회적 대화체제

4.1. 사회협약의 유형

- 90년대 나타나는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의 유형은 거시경제적 조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협약체제와 비교되며, 그 추진 맥락, 협약의 내용, 목적, 정부의 역할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새로운 사회협약 유형은 ‘경쟁을 위한 조합주의’ (Rhods, 2001), ‘공급측면의 조합주의’ (Traxler, 2001; Visser and Hemerijk, 1997), ‘된 조합주의 (Traxler, 2001)’ , 포스트 코포라티즘(O'Donnel, 2001)등으로 불리워 짐.

〈표〉 유럽의 사회적 협약

Level	National	Regional / Local	Sectoral	Company
Austria	ep/sp		ep	ep
Belgium	ep/sp/fp	sp	ep	ep
Denmark	sp	sp	ep	ep
Finland	ep/sp		ep	ep
France	ep		ep	ep
Germany	sp/fp	sp/fp	ep	ep
Greece	ep/sp	sp		
Ireland	sp	sp		ep
Italy	sp	sp	ep	ep
Luxembourg	sp		ep	ep
Netherlands	ep		ep	ep
Norway	ep			ep
Portugal	sp	sp		ep
Spain	ep	sp	ep	ep
Sweden	fp		ep	ep
United Kingdom				
Iceland	sp			

(ep) Employment pacts between the social partners; (sp) Social pacts between the social partners and government; (fp) Failed attempts to conclude social pacts. Source: Zagelmeyer S. (2000) *Innovative Agreements on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in the European Union and Norway*, European Foundation fo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출처: Strategic Partnership Study Group(2002), 정승국(2007)재인용

- 전통적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체제와 이러한 새로운 사회협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사회적 합의의 모형과 변화

	전통적 사회적 합의/사회 협약 (keynesian corporatism)	경쟁을 위한 합의/사회 협약 (competitive corporatism)
주요 목적과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 압력의 축소; 포괄적인 거시경제적 조정; 임금인상완화; 사회권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의 확보; 공급 사이드의 노동시장 개혁; 사회정책 규제의 개혁; 비임금 노동 비용을 줄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축소
정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의 규제 존속; 국제자본거래의 양과 방향이 주요 관심은 아님 ▼ 인플레이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투쟁이 정부의 지배적인 목표 ▼ 케인즈주의적인 조정의 논리(Scharp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의 자유화; 국제자본거래의 양과 방향이 주요 관심 ▼ 재정적자에 대한 투쟁; 고용성장을 촉진 시키려는 노력들 ▼ 통화주의적인 조정의 논리(Scharpf); '제도화된 통화주의' (Streeck)
이익집단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화되고,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포괄적인 이익집단(노조와 사용자단체)가 합의의 필요 전제조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집단 시스템의 적절성 불확실; 강력한 산별노조 및 사용자 조직 해체의 부정적 효과
임금 및 노동시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인상완화는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 ▼ 조합주의적인 교환의 논리로서, 임금억제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회적 지출의 증가와 탈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서 임금억제, 임금교섭과정의 유연화와 부분적인 규제완화 ▼ 고용업의 유연화와 부분적 규제완화 ▼ 위계의 그늘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자와 중개자 ▼ 사회권과 고용권의 확장, 재정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재정적 보상은 없음 ▼ 참여적 보상; 정책결정과정으로 이익집단 통합 ▼ 위계적; 불균등한 교섭 ▼ 단계적 교섭; 일방적인 단기간의 협력
교환의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인 포지티브 게임;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보상비용의 외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논리

출처: Siegel(2005), 정승국(2007)재인용

○ 90년대 발전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체제와 사회협약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스페인

- 1991년 경제사회위원회 법률에 의해 설립.
- 1996년 합의이행의 감독을 위한 제도설립 노사합의.

2) 아일랜드

- 지역 경제사회발전 다룰 ADM(Area Development Management)설립.
- 1993년 실업문제를 다루기 위해 NESF설립. 전국실업자조직서 제안.
- 1996년 사회협약기구(NESC)내 Community and Voluntary Pillar생김.
- 1997년 7월 기업 수준의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 NCP 설립. 기능: 사업장 파트너쉽이 드문 상황에서 모범사례 보급, 작업장 파트너쉽 지원.
- 1998년 NESC와 NESF의 대표성 강화. 두 기구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 보완성을 분명히 함. 사무실을 같은 빌딩에 위치함으로써, 지원 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98년 이후 지자체 대표 및 주요 정부부처 대표의 참가. 이행점검 기능을 갖도록 함.
- 2001년 NCP를 대체 NCPP가 설립. NCP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서 사업장 파트너쉽 확산, 조정, 연구, 조사, 분석, 훈련 등을 수행.
- 2002년 NESDO설립, 사회적협약기구 개편. 법적지위부여 초안 마련.
- 2006년 의회에서 NESDO법 통과.
- 사회적 파트너쉽 이중의 진화과정을 경험(O'Donnell, The Future Social Partnership in Ireland, 2001). 아일랜드에서 5개 사회협약을 거치며 거시경제 문제, 구조적 문제, 공급사이드(아동보육, 평생학습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초점이 변화해 왔음. 이슈변화와 함께 방법도 변화해 왔음.(거시경제전략은 3년 단위로 고위수준의 교섭을 통해 다루어왔지만, 훈련, 기업의 발전, 아동보육 등의 문

제는 주기적인 고위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없음. 공급측면의 이슈를 취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워킹그룹, 태스크포스, 포럼 등을 구성. 장기 실업, 농촌의 재생문제 등을 취급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창출)

Box 1: The Dual Evolution of Partnership

The Evolving Content and Method of Partnership	
<i>Content</i>	<i>Method</i>
Macro to structural and supply side	high-level bargaining to multi-level problem solving

3) 브라질

- 룰라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03년 1월 임시조치로 경제사회발전위원회와 경제사회 발전위원회 특별사무국을 설치.

4)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4년 민주선거를 통해 출범한 첫 의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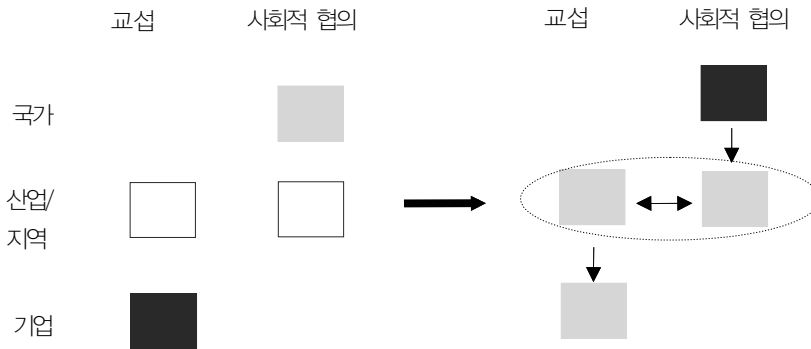
○ 사회협약의 분권화와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 중요성 강조 경향

- 1990년대 들어서 유럽 여러 지역에서 지역협약이 확산되고 있음.
- 정책결정자들이 집단과의 교섭을 통한 해결책을 시장 해결책보다 더 우위에 서 있다고 고려하는 몇 개 안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지역협약을 통한 지역의 구조조정임(Streeck, 2006).

- 아일랜드 및 이탈리아의 사례가 두드러짐.

- 사회적 당사자의 주체적 조건 확보,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의 대안으로 「유연하고 조정된 분권화모델」 (flexible and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model)이 강조됨. 이 모델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규·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노사관계체제 극복을 목적으로 함

[그림] 한국의 노사관계 체제 전망 (유연하고 조정된 분권화 모델)



출처: 임상훈(2007)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과 세계시장 경쟁 격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속적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라는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의존성이 높아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사정이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경쟁적 조합주의는 우리에게 하나의 유효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

- 세계화에 더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

대되는 노동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지역차원의 현장과 실질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노령화에 대비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용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상 차별을 제거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속에 고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전략은 유효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세계화나 노동시장 변화에 덧붙여 우리나라는 급속히 지식기반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현장에서 생산방식과 작업의 내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함.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져올 고용의 불안정성 가능성에 매우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방식과 작업의 변화를 구조조정으로 인식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음. 사용자는 자본조달을 주식시장에 점점 의존하면서 단기적인 이익극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초래하며,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배제한 채 생산방식과 작업내용을 변화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노사정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성 위험을 감소하는 공동노력을 경주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은 우리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 노사정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 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정 협력,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제고, 그리고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사협력과 지원체제 마련으로 요약됨.

-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사이에 전략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더욱 강조되는 환경임.

- 우리나라는 경쟁적 조합주의를 지탱하고 유연안전성을 지원하며 기업수준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조건이 미비함. 사회적 당사자의 주체적 조건과 단체교섭, 사회적 협의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 그러나, 기업별교섭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도 발전하고 있으며 중앙수준 사회적 협의가 산업(업종)수준과 지역수준의 사회적 협의로 확장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여건에서 기존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정 조건하에서 노사정이 기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대화체제 발전이 핵심적 미래 국가발전 전략과제라 할 수 있음.

4.2.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의 비교와 시사점

- 대부분 나라에서 사회적 대화체제는 법률적 기구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기구 또는 비공식기구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해당 정부 부처 또는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법률기구에 준하는 안정적 운영형태를 보임.
- 경제 및 산업구조, 노사관계, 정치권력 등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대화체제의 운영에 다소간의 부침이 나타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 다수계층에게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

1) 사회적 대화체제의 참여주체

- 나라별 제반 특성과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참여주체의 구성이 자연스럽게 달라짐. 그러나 나라별 특성, 사회적 대화의 수준(전국/지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로서 역할 하는 것이 공통적임.
- 또한 노·사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로서 역할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대

화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①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노·사·민·정의 형태로 직접 참여하거나, ② 정부와 지자체가 임명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공익위원’, 또는 정부와 협조체제를 갖는 ‘정당’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③ 사회적 대화체제의 기능이 되는 ‘자문’, ‘협의’, ‘협약’ 등의 결과물이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입안 및 추진 등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사회적 대화체제의 의제

- 전통적으로 의제의 범위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의 구성, 범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실업 등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는 ‘소득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이 중심.
- 그러나 노·사 간접적이고 거시적인 의제들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아님. 특히 사회적 대화체제의 모델로 평가되는 나라들을 보면, 참여주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노·사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제 뿐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거시사회경제정책 등 노·사에 간접적이고 거시적인 의제들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임금고용·노사관계 외 의제를 다루는 것은, ① 노·사가 경제사회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책임을 갖되, ② 사회통합과 사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의제논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사회 전체 일반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사회적 대화체제의 제도화

(1) 의제 선정

- 일차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로서 노·사의 요청에 의한 의제 선정이 다수를 차지함.

-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필요 또는 제안에 의한 의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대화체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를 제안하거나, ②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의제를 제안하는 형태를 가짐.

(2) 회의체 운영

- 대부분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법률적 기구로서 제도화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조직체제와 구성, 회의절차와 운영 등이 규정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대화체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주체 외에 관련 의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제 안에 상설로 운영되는 전문가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3) 의제의 실행

- 노사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단기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
- 사회적 대화체제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에서는 중단기적 정책 반영은 물론, 장기적 국정,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의 철학 또는 운영방식으로서 그 성과를 수용하고 있음.

(4) 이행 점검

- 사회적 대화체제가 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제에 대한 정책 협의나 협약 이후 그 이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부분 나라들이 관련 의제의 이행점검을 암묵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적 대화체제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나라들의 경우 규정으로 ‘이행점검 체제를 확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후 평가내용이 실제로 해당주체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추적하고 있음.

(5) 지역과 업종수준 포괄

- 전국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지역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즉, 간접적으로 지역차원까지 분권화 된 중층적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적 연관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지역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자체의 경제적 요구와 노사관계,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 등이 맞물려 일정한 성과를 보임.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1982년 Val Duchess 회담이후 26개 업종(금속, 화학, 섬유, 운송, 통신, 호텔 등)에 걸쳐 업종별 대화(sectoral dialogue)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이것은 산별교섭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6) 정부의 적극적 참여여부

- 노사 외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체제의 성실한 운영과 성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수반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책임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정권이 바뀌거나 관련 부처의 정책 의지가 약화되었을 때 사회적 대화체제가 급격히 약화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체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참여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7) 사회적 대화체제 외연의 확대

- 유럽연합(EU),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에서는 소수의 또는 세력이 약한, 그렇지만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회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노사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사회주체들만을 사회적 대화체제의 파트너로 받아들였었음. 그러나, 90년대 이후, 점증하는 세계화와 복지국가체제의 개혁논쟁 등과 관련, 대두되는 사회협약체제에서는 참여주체와 논의의제의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임
 - 즉, 실업자, 비정규직,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지역대표 등 참여주체와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사회적 배제 등 논의 의제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임.
- 사회적 대화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 및 수준에서의 다양한 사회주체들과의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5. 결론

- 첫째, 사회협약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자체 장의 의지와 정책목표가 매우 중요함.
 -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운영에 있어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중시하며 정례적으로 자문을 받고, 논의 결과를 정책방향을 결정해나가는 중요한 기틀로 삼겠다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가 그 성공에 핵심적** 요소임.
- 둘째, 이러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임시적, 비상설적 운영방식은 한계가 있음. 지원부서가 자치행정과 소속이나 최근에는 6급공무원을 전담직원으로 배정. 이것은 그간 이 협약위원회 실제 기능이나 활성화에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조례 근거규정(현재는 ‘임의규정’ 임)을 토대로 이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조직과 인력 및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체제**를 갖 추어야 함.
 - 특히, 본회의 외에 분과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력 외에 지자체 자체 충원 전문인력 또는 지자체 전문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이 파견, 간사로 주도하는 **상설회의체 운영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협약기구와 다소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갈등예방과 조정기능이 중심적인 현재의 체제’**를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회협약위원회’**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이 경우 현재 협약위원회의 목적규정인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라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원칙(제1조)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칫 그 기능과 역할이 추상적인 논의기구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경제정책적 이슈 등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등의 방식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넷째, 사회협약위원회의 목적 규정의 보완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방식**의 일부 보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즉, 사회경제적 이슈의 논의시 특히, 위원회 참여주체 중 핵심 경제주체인 노사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야 할 것임. 즉, 노사는 사회경제문제를 다루고 그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제 사회단체 중 산하 또는 가입조직을 갖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조직적 단위로 일정 부분 이들의 대표성을 보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현재 위원구성은 사회 각 부문별대표자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협의나 합의

결정의 구속력이 약한 실정이므로, 노사의 참여, 책임성제고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이것은 대표권과 의결권 중에서 노사의 비중을 참여주체의 하나로 단순한 1/n이 아닌 1/3 또는 1/2등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예를 들어, 노사가 그 직접적 대상인 고용,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각종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적 이슈의 경우의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함.)

○ 다섯째, **사회협약위원회의 의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현재와 같이 주로 갈등 예방 및 조정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외에 실제적인 사회협약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이슈를 논의 의제로 하는 협약위원회로 발전하여야 할 것임.

- 즉,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이슈로는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동시장, 보건의료, 돌봄, 빈곤, 주거, 교육 등의 이슈와 제주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적 이슈를 그리고 대상 그룹별로는 노인, 아동, 청년, 여성, 비정규근로자, 이주노동자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그룹을 논의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논의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회협약위원회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 여섯째, **운영방식도 본위원회와 각 분과위가 '정례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이것이 상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임). 기존의 사회적대화기구의 경험에 비추어 상설회의체보다는 **의제별회의체 방식의 논의를 하되, 의제별로 논의 시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논의결과를 '합의' 또는 '공익위원안', 기타 '논의 결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여 논의가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례나 또는 관련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여 논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해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참고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별첨자료1】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개 요

- 목 적 : 근로자사용자 및 전라북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설치 운영
- 설치일 : 2001. 4. 20(조례 제3052호)
*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10. 10. 1, 조례 제3529호)
- 위 원 : 26명(위원장 도지사)
* 근로자 대표 6, 사용자 대표 6, 공익대표 4, 자치단체 대표 2, 지방노동관서 대표 4, 사회단체 2, 교수 2
- 임 기 : 2년(2011. 7. 1 ~ 2013. 6. 30)
- 하부협의체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노사관계 분과협의회, 고용-인적자원개발 분과협의회, 지역전략업종별 발전 분과협의회

□ 기 능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기업의 작업장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노동자의 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치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 노사관계 분과협의회 운영 방안

□ 구 성

- 인 원 : 10명(노 3, 사 2, 민 3, 정 2)
※ 위원장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 운 영

-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분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
- 분과협의회에서 심의된 안전에 대하여는 협의, 미협의로 구분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
- 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 간사 선임

□ 주요사업 내용

- 지역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진단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분쟁해소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워크숍 개최
-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작업장 혁신, 노사협력체제 구축 방안,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분규발생 원인 분석·사후관리
- 노사협력을 위한 지역적인 지원·협조체제 구축
- 노사관계 분과협의회 위원들을 위한 분쟁조정 심화과정 워크숍 등

2. 고용인적자원 개발 분과협의회 운영 방안

□ 구 성

- 인 원 : 10명(노 2, 사 2, 민 4, 정 2)
※ 위원장 : 전라북도 민생일자리본부장

□ 운 영

-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분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
- 협의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미협의로 구분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
- 분과협의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간사 1인 선임

□ 주요사업 내용

- 지역 고용 대책 수립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발굴, 심사
- 일자리 창출·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 지역노동시장 인프라 구축방안
- 외국인력·여성·고령자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방안 논의
- 지역 노사고용전문가 양성 및 확대방안 논의
- 차별 없는 일터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예방, 개선방안 모색

3. 지역 전략업종별 발전 분과협의회 운영 방안

□ 구 성

- 인 원 : 10명 (노 3, 사 3, 민 2, 정 2)
※ 위원장 : 전북대학교 취업지원본부장

□ 운 영

-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분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
- 협의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미협의로 구분하여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

□ 주요사업 내용

- 지역 산업·업종 발전 전략개발 및 포럼·세미나 개최
- 버스·택시·공공기업발전 등 지역의 업종별 현안 논의
 - 지역산업·업종별 전략개발 등 논의
 - 업종별 동향 파악 및 정보 교류
 - 주요 사업 및 업무 창출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
- 기타 지역전략업종별 발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등

【별첨자료2】

외국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제

구 분	논 의 의 제
<p>아일랜드 (국민경제사회협의회)</p>	<p>○ 노사 직접적 의제 - 임금,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일자리, 노사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p> <p>○ 노사 간접적 의제 - 평생교육, 빈곤문제, 주택, 의료, 여성(양성평등), 고령자, 소수인종</p>
<p>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p>	<p>○ 노사 직접적 의제 - 임금, 고용안정, 실업대책,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노사관계, 해고, 사회보장, 산업안전, 사회복지, 직업훈련</p> <p>○ 노사 간접적 의제 - 평생교육, 자영업, 물가, 교통/통신, 의료, 여성(양성평등), 장애인, 고령자, 소수인종</p>
<p>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p>	<p>○ 노사 직접적 의제 - 임금, 노동시간,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제성장, 산업안전</p> <p>○ 노사 간접적 의제 - 외국인 이주청소년 사회통합,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건강,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경제정책</p>
<p>스웨덴 (국가노동시장이사회)</p>	<p>○ 노사 직접적 의제 - 임금, 고용안정, 실업대책,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노사관계, 해고, 사회보장, 산업안전, 사회복지,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p> <p>○ 노사 간접적 의제 - 기업투자/성장전략, 의료, 여성(양성평등), 장애인, 고령자, 소수인종</p>
<p>핀란드 (국가경제위원회)</p>	<p>○ 노사 직접적 의제 - 임금, 고용안정, 실업대책, 고용안정,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노사관계, 해고, 사회보장, 산업안전, 사회복지, 직업훈련</p> <p>○ 노사 간접적 의제 - 조세, 기업투자/성장전략, 교육, 여성(양성평등), 고령자</p>
<p>스페인 (경제사회협의회)</p>	<p>○ 노사 직접적 의제 - 임금, 고용안정, 실업,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해고, 사회보장, 산업안전, 사회복지, 직업훈련, 중소기업</p> <p>○ 노사 간접적 의제 - 기업투자/성장전략, 기술혁신, 의료, 여성(양성평등), 장애인, 고령자, 소수인종</p>

【별첨자료3】

〈외국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반 특성〉

구분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명칭	경제사회협의회(CES)	경제사회협의회(SER)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	국가경제위원회
설립	1946년 헌법	1950년 법률	1972년 이래 비법정기구 2002년 법적 기구화	1957년 법률	1966년 법률
위상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의제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참여주체	- 총 231인 노(64), 사(37), 농업(31), 협동조합(10), 자영업(7), 기능인(10), 해외동포(13), 상호보험(4), 전국가족협회 연합(10), 협회(5), 기타 각계지도자(40) - 임기 5년	- 총 33인 노(11), 사(11), 공익(11) - 임기 2년	- 총 30인 노(5), 사(5), 정(5), 농업(10), 사회단체(5) - 임기 3년	- 총 121인 노(44), 사(37), 자영업(18), 사회단체(10), 공익(12) - 임기 5년	- 총 18인 노(2), 사(6), 정(6), 공익(4) - 임기
조직	- 본위원회 - 이사회, - 10개 분과위 (사회, 노동, 재정, 외교, 농업, 식품, 일반경제, 지역경제, 국가환경관리, 인력관리, 생산성연구개발, 기획)	- 본위원회 - 14개 분과위 (경제사회정책, 최저임금, 경쟁시장기구,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농어촌 발전 계획, 소비자, 국제경제·사회문제, 사회 경제전문가, 사회보장, 고용시장, 연금, 노동조건, 노사공유, 집행자)	- 본위원회 - 분과위	- 본위원회 - 7개 분과위 (경제정책, 정보, 노동, 사회정책, 소득정책, 사회인프라, 산업생산, 기타 국내·한·유럽연합정책)	- 본위원회
사무처	150명 488억원(수상실 예산)	160명 150억원(경영계 부담 세금)	10명 수상실 예산	100명 29억원(정부예산)	10명

구분	스페인	브라질	남아공	스웨덴	오스트리아
명칭	경제사회협의회 (CES)	사회경제발전협의회 (CDES)	국가경제발전노동위원회 (NEDLAC)	국가노동시장이사회 (AMS)	페리티위원회 (Parity Commission)
설립	1991년 법률	2003년 대통령 임시조치	1994년 법률	1938년(샬트쉐버덴협약) 1990년(법률)	
위상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합의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협의 및 자문기구
의제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경제·사회정책
참여주체	- 총 60인 노(20), 사(20), 농업(3), 어업(3), 소비자(4), 협동단체(4), 공익(6) - 임기 4년	- 총 102인 노(13), 사(37), 정(12), 사회단체(17), 공익(12), 금융전문가(7), 종교인(5) - 임기 2년	- 총 72인 노(18), 사(18), 정(18), 사회단체(18) - 임기 없음	- 총 7인 노(1), 정(1), 정당(1) 사회단체(1) - 임기	- 총 15인 노(4), 사(2), 정(7), 농(2) - 임기
조직	- 본위원회 - 7개 분과위 (경제·조세체계, 유럽단일시장, 지역발전·협력, 노사관계, 고용·사회보장, 건강·소비·사회문제·교육문화, 지역분과·환경, 농어업·사회경제노동 규약)	- 본위원회 - 9개 분과위 (사회보장개혁, 조세개혁, 노동개혁, 중기개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초, 청년 취업, 영세기업·비공식부문, 지역연, 경제상황, 주택)	- 본위원회, - 4개 분과위 (노동시장, 통상산업, 개발, 재정통화정책)	- 본위원회 - 이사회 (자문이사회, 실업보험자문위원회, 직업생활자문위원회, 예술미디어고용자문위원회, 징계이사회) - 지역노동이사회	- 본위원회 - 4개 분과위 (공동위원회, 물가소위원회, 임금소위원회, 경제사회자문위원회)
사무처	69명 72악원(정부예산)	상설	19명 노동부 예산	- 임기	- 임기

1. 위상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					○							
법률 비공식기구	○	○				○	○	○	○(한법)	○(지역)	○(지역)	○
비 상설 비공식기구		○						○				
			○(전국/지역)	○(지역)							○(전국)	

- 네덜란드 SER(사회경제협의회)은 법률기구지만 정부기구는 아님. 재정면에서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경영계의 지원에 의해 활동.
- 스웨덴은 1992년 사회적 협회가 공식적으로 해소되었으며, 90년대 동안 국가적 수준에서 사회적 협의를 위한 기구로 ‘노동시장이사회’와 ‘공적연금기금위원회’가 활동함. 여기서는 ‘노동시장이사회’(사용자단체는 불참석)를 검토하였음. ‘공적연금기금위원회’는 노시는 포함되지 않고 5개 정당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 : 99년 이후 세계화과정에서 전국수준의 사회적 협회는 사라지고 초점이 지역수준으로 옮겨옴.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진형은 중앙정부 후생노동성 산하 ‘지방최저임금위원회’, ‘지방노동회’, ‘지방노동감독회’ 라는 세 기관으로 제도화되면서 발달

남아공	1995년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
네덜란드	1950년	사회경제협의회(SER-범물기구), 노동재단(비공식기구)
독일	1967 ~ 1977년, 1998 ~ 2002년	중앙노동공동체(ZAG) '협조행동', '일자리, 직업훈련과 경쟁력을 위한 연대'
미국	1992년	위스콘신 지역수준 노사정 협의사례(W RTP)
브라질	2003년	경제사회개발위원회(CDES)
스웨덴	1938년, 1990년	셴트쉐비덴협약, 국가노동시장이사회(AMS)
스페인	1991년	경제사회협의회(CES)
아일랜드	1973년(비법적), 2002년(법적기구)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 국가경제사회포럼(NESF), 파트너십과 성과를 위한 국가센터(NCPP)
오스트리아	1957년	패리티위원회(Parity Commission)
이탈리아	1957년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
일본		아이치현의 지역수준 노사정 협의 사례
핀란드	1966년	국가경제위원회

1950년대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스웨덴(1938년)	네덜란드(1950년) 오스트리아(1957년) 이탈리아(1957년)	핀란드(1966년) 독일(1967년)	아일랜드(1973년)		스페인(1991년) 남아공(1995년)	브라질(2003년)

2. 참여주체 1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노/정												
노/정/사회단체						○(정당)						
노/정/공익												
노/정/사회단체/공익		○ ¹⁾										
노/사												
노/사/사회단체												
노/사/공익(전문가)		○ ²⁾										
노/사/사회단체/공익												
노/사/자영/사회단체/공익									○			
노/사/정			○	○							○	
노/사/정/사회단체	○											
노/사/정/공익								○ ³⁾				○
노/사/정/사회단체/공익					○(종교인)							
노/사/정/농									○			
노/사/정/농/사회단체								○ ⁴⁾				
노/사/정/농/공익												
노/사/정/농/사회단체/공익												
노/사/농/어/소비자/협동조합/공익							○					

- 공익 = 교수, 학계 전문가 1) 노동재단 2) SER 3) NCPP 4) NESCF, NESF = NESCF + 정당

- 핀란드의 경우 공익은 정부와 밀접(재무부차관보/중앙은행장/수상차관보/협의회사무국장)

3. 참여주체 2

남아공	노사/정/사회단체	총 70여명	각 주체가 18명을 넘지 않도록
네덜란드	노사/공익, 노/사	총 33명, 총 16명	각 주체별로 11명, 각 주체별로 8명
독일	노사/정	총 14명	노 5명, 사 4명, 정 5명('일자리연대' 노사정대표회의의)
미국	노사/사/정		
브라질	노사/정/사회단체/공익/종교인	총 102명	노 13명, 사 37명, 정 12명, 사회단체 17명, 공익 12명, 금융전문가 7명, 종교인 5명
스웨덴	노/정/정당/사회단체	총 7명	각 주체별 1명
스페인	노/사/농/어/서비스자/협동조합/공익	총 60명	노 20명, 사 20명, 농 3명, 어 3명, 소비자 4명, 협동조합 4명, 전문가 6명
아일랜드	노사/정/농/사회단체	총 25명	각 주체별로 5명
오스트리아	노사/정/농	총 15명	각 주체별로 노 4명, 사 2명, 정 7명, 농 2명
이탈리아	노사/자영/사회단체/공익	총 121명	노 44명, 사 37명, 자영 18명, 사회단체 10명, 공익 12명
일본	노/사/정		
핀란드	노/사/정/공익	총 18명	노 2명, 사 6명, 정 6명, 공익 4명

- 아일랜드 NESF : 총 60명(<노5/사5/농5=15>), 정부15, 사회단체15, 정당15), NCPP : 총 12명(노4/사2/정2/공익4)

4. 참여주체 3

노/사 중심	노/사 중심 + ∞	노/사(50%) = 나머지(50%)	노 = 사 = 정 = 농 = 사회단체	노/사/정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공 아일랜드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핀란드

5. 의제 1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임금 안정	○	○	○	○	○	○	○	○	○	○	○	○
고용 안정	○	○	○	○	○	○	○	○	○	○	○	○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실업대책	○	○	○	○	○	○	○	○	○	○	○	○
근로시간	○	○	○	○	○	○	○	○	○	○	○	○
비정규직	○	○	○	○	○	○	○	○	○	○	○	○
사회적 일자리	○	○	○	○	○	○	○	○	○	○	○	○
노사관계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사회보장	○	○	○	○	○	○	○	○	○	○	○	○
사업안정	○	○	○	○	○	○	○	○	○	○	○	○
사회복지	○	○	○	○	○	○	○	○	○	○	○	○
직업교육훈련	○	○	○	○	○	○	○	○	○	○	○	○
기업투자 및 선정전략	○	○	○	○	○	○	○	○	○	○	○	○
기술혁신	○	○	○	○	○	○	○	○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조세	○	○	○	○	○	○	○	○	○	○	○	○
번개형	○	○	○	○	○	○	○	○	○	○	○	○
평생교육	○	○	○	○	○	○	○	○	○	○	○	○
지역인	○	○	○	○	○	○	○	○	○	○	○	○
빈곤문제	○	○	○	○	○	○	○	○	○	○	○	○
물가	○	○	○	○	○	○	○	○	○	○	○	○
주택	○	○	○	○	○	○	○	○	○	○	○	○
교통/통신	○	○	○	○	○	○	○	○	○	○	○	○
환경	○	○	○	○	○	○	○	○	○	○	○	○
인로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여성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고령자	○	○	○	○	○	○	○	○	○	○	○	○
소수인종	○	○	○	○	○	○	○	○	○	○	○	○

-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제와 자료 가운데 90년대 이후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료에 준함.

- 단 어느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남아공: 통화, 환율, 미국: 인적자원관리)

6. 의제 2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임금	○	○	○	○	○	○	○	○	○	○	○	○
고용 안정	○	○	○	○	○	○	○	○	○	○	○	○
일자리 창출	○	○	○	○	○	○	○	○	○	○	○	○
실업대책	○	○	○	○	○	○	○	○	○	○	○	○
근로시간	○	○	○	○	○	○	○	○	○	○	○	○
비정규직	○	○	○	○	○	○	○	○	○	○	○	○
사회적 일자리	○	○	○	○	○	○	○	○	○	○	○	○
노사관계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사회보장	○	○	○	○	○	○	○	○	○	○	○	○
산업안전	○	○	○	○	○	○	○	○	○	○	○	○
사회복지	○	○	○	○	○	○	○	○	○	○	○	○
직업교육훈련	○	○	○	○	○	○	○	○	○	○	○	○
기업지원정책	○	○	○	○	○	○	○	○	○	○	○	○
기술형인	○	○	○	○	○	○	○	○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조세	○	○	○	○	○	○	○	○	○	○	○	○
법 개혁	○	○	○	○	○	○	○	○	○	○	○	○
평생교육	○	○	○	○	○	○	○	○	○	○	○	○
자영업	○	○	○	○	○	○	○	○	○	○	○	○
빈곤문제	○	○	○	○	○	○	○	○	○	○	○	○
물가	○	○	○	○	○	○	○	○	○	○	○	○
주택	○	○	○	○	○	○	○	○	○	○	○	○
교통/통신	○	○	○	○	○	○	○	○	○	○	○	○
환경	○	○	○	○	○	○	○	○	○	○	○	○
의료	○	○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여성/양성평등	○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
고령자	○	○	○	○	○	○	○	○	○	○	○	○
소수인종	○	○	○	○	○	○	○	○	○	○	○	○

7. 의제 3 <각 나라별 의제 범위>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노사 직접적 일차적 의제	12	12	14	9	12	14	13	9	12	11	11	13
노사 간접적 거시적 의제	8	10	2	0	11	5	9	8	1	6	8	4

단위 : 개

8. 의제 4 <참여주체 유형별 의제 범위>

	노사 중심 + α		노/사(50%) = 나머지(50%)		노=사=정=농=사회단체	
	노사 중심 (총 33명)	스페인(총 60명) (노20/사20)=40 + (노3/아3/공익6/등)=20	이탈리아(총 121명) (노44/사37)=81 (지명18/사회10/공익12)=40	노/사(50%) = 나머지(50%) 브라질(총 102명) (노13/사37)=50 = (정12/공익12/사회단체17/금융7/종교5) = 53	아일랜드(총 25명) 노5=사5=정5=농5=사회단체5	노=사=정=농=사회단체
노사 직접적 일차적 의제	12	13	11	12	9	
노사 간접적 거시적 의제	10	9	6	11	8	

9. 제도화 1-1 <의제 선정>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노동 축의 제한												
사용자 축의 제한												
정부 축의 제한		○										
공익전문가집단 제한												○
노사		○										
노·사·정			○	○							○	
노·사·기타주체												
참여주체 공동 제한	○				○		○	○	○	○		

- 네덜란드 SER은 자문기구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구임. 그러나 정부기구는 아니므로 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정책의 근간에 대해 자문함.
- 핀란드 국가경제위원회는 수상자문기구로서 정부를 자문하는 종합최종자문기구임.
- 오스트리아 페리티위원회안에 네 개의 하부위원회가 있고, 그중 경제사회지문위원회가 실질기구. 비공식적 법적 구성으로 인해 아무런 구속력 없고, 자체 정관이나 예산 없음.

10. 제도와화 1-2 <운영 목표>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주체간 정보 공유	○	○	○	○	○	○	○	○	○	○	○	○
주체및국민대상 정보 제공		○								○		
정책 연구	○	○	○		○		○	○	○	○		○
정책 자문	○	○	○	○	○	○	○	○	○	○	○	○
정책 협의	○	○	○	○	○	○	○	○	○	○	○	○
입법과정 참여										○		
정책 집행		○				○						
노사관계 조정·지원	○		○	○				○			○	

- 네덜란드 SER은 자문기구로서 사회경제 쟁점에 관해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며, 동시에 행정기구로서 상품위원회와 산업위원회 회 감독, 기업합병행위감독의 기능 수행
- 노동재단은 노사협의기구로서 만족스러운 노사관계 촉진을 위해 노사에 정보와 지문 제공, 노사간 대화 장려, 정부 및 기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함.
- 이탈리아는 법안마련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의회에 법률초안을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전국의 단체협약 보관서 운영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11. 제도와화 1-3 <실행>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장기적 국정운영방식 채택			02)				03)	05)				06)
중기적 정부정책 반영	0	0	0	0	0	0	0	0	0	0	0	0
단기적 반영	0	0	0	0	0	0	0	0	0	0	0	0
정부의 적극적 태도 (참여/수용/집행)	참여	수용/집행	참여/수용	참여/수용	참여	참여/수용/집행	수용	참여/수용/집행	참여/수용	수용	참여/수용	참여
법적 구속력 여부	X	01)	X	X	X	0	X	04)	X	X	0	X

- 1) 네덜란드는 SER의 자문에 대해 정부가 협의회 의 자문을 받드시 이를 필요는 없으나, 따를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SER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2) 브라질 : 민주주의/자유/평등/국가정체성/지속가능성/다양성/주권
- 3) 아일랜드 : 국가경제의 효율적 발전/사회정의 실현/사회적 파트너십 발전
- 4) NESF : 전략보고서 및 합의에 기초한 발전전략 제출, NESF : 이행점검과 평가분석 기능, NCPP : 사회적 파트너십이 개별 사업장으로 확산되어 합의적 노사관계로 수용 정착되도록 지원
- 5) 오스트리아 :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폭넓은 논의, 의장이 발표하는 성명이 경제정책 방향 가늠하는 척도가 됨.
- 6) 핀란드 : 핀란드경제와 장기발전전망, 삶의 질 향상.

12. 제도화 1-4 <기타>

	남아공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이행점검체계 유무	X	O	X	O	X	X	X	◎	X	X	X	X
지역과 업종수준 포괄	X	X	O	O	O	O	X	△	X2)	O	O	O
비공식 사회적 대화 활성화	X	O1)	X	X	X	X	X	◎	X	X	X	X

1) 네덜란드는 노사는 서로를 대등한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문화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확장기제' 로 인하여 개별노동자 의 이해가 존중되는 측면이 있다.

2) 오스트리아 : 지역/업종수준은 아니지만 기업수준 - 중간수준 - 중앙수준의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13. 제도화 2

의제 선정	노/사 중심		노/사(50%) = 나머지(50%)		노/사 중심 + α		노 = 사 = 정 = 농 = 사회단체	
	네덜란드	노/사, 정	네덜란드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적 국정운영방식 채택								
중기적 정부정책 반영	O		O		O			
단기적 반영	O		O		O			
이행점검체계 유무	X		X		X			◎
지역과 업종수준 포괄	X		O		X			X
정부의 적극적 태도	수용/집행		참여		수용		수용	참여/수용/집행
비공식 사회적 대화 활성화	O		X		O(?)		X	◎